

# 해 양 수 산 부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수산업법」 제44조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·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(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·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)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

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않으면 1차 위반 1,500천원, 2차 위반 3,000천원, 3차 이상의 위반시 5,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, 근해어업의 휴업신고, 근해어업의 제한·정지, 근해어업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·입항의 제한 및 근해어업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.

따라서 근해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강원도 ○○○본부는 [표]와 같이 근해어업을 받은 어선의 매매, 임대차 등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.

[표] 근해어업허가 및 지위승계 현황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 8월말
허가 건수	260	254	224	211
지위승계 건수	7	10	8	9

따라서 강원도 ○○○본부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등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신고 기간을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그러나 강원도 ○○○본부는 근해채낚기 어선 000○○호(39톤)의 소유주 ○○○로부터 2015. 6. 15. 지분 10% 증여받은 ○○○이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위한 신고기간 만료일보다 7일이 지난 2015. 7. 22.에 신고하였음에도 1차 위반 과태료인 1,500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2015. 7. 24.에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 강원도지사는**

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분을 부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.